

#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 홈페이지 게재

■ 주택경매예정통지 명세 (기준일: 2025-06-27)

| NO | 대상자번호    | 이름  | 생년            | 성별 | 주택 경매<br>예정 주소                  |                      |        | 기한이익<br>상실 유무                |
|----|----------|-----|---------------|----|---------------------------------|----------------------|--------|------------------------------|
| 1  | 10717526 | 임*영 | 1965          | 남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74번길 9-* (여래리) |                      |        | 채권양도 전 기한이익 상실               |
|    |          |     | 주택경매신청<br>예정일 |    | 채무<br>조정 기한                     | 최초대출기관<br>(또는 양도 기관) | 수입사    | 수입사 담당자                      |
|    |          |     | 2025-07-24    |    | 2025-07-23                      | HK저축은행(A)<br>(양도채권)  | SM신용정보 | 신현기 실장<br>( ☎ 051-714-1643 ) |

- ▣ 귀하께서 채무조정 관련 신청을 하셨다면 당사로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연체료는 기준일 이후 상환 시까지 가산되며 정확한 채무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를 홈페이지 게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채무조정요청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 ▣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 1항에 따라 법조치 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

귀하께 수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아 경매 신청 예정일까지 아래 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귀하 소유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의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경매신청 예정임을 통지 하오니 채무상환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 가능 기한까지 당사와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통하여 귀하의 채무에 대한 추심 업무를 위임 받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